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1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605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22. 선고 2015구합20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2,948,890원, 농어촌특별세 16,294,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2,948,890원 중 99,398,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16,294,880원 중 9,939,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F, G 등에게 B의 주식 5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B의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2005. 3. 8.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액이 215,400,000원(=4,308원×50,000주)에 이르므로, 원고가 B의 주식 전부를 8천만 원에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우며, 2005. 3. 8.을 기준으로 F, G의 주식보유량에 변동이 없고 F, G이 B의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redacted]세무서장이 G, H, I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을 뿐 F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바, 적어도 당시 F, G이 계속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1

의2 제1항에 따라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였을 때 다시 소유권이 변동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명의신탁 후 5년을 경과하여 다시 주식을 취득한 원고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 및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C, D, E, F, G 사이의 법인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상 '매수인은 원고로, 매매방법은 주식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기로 하고, 변경 후 주주현황은 원고가 B의 주식 5만주를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당시 B이 [redacted]세무서 및 [redacted]공단에 부가가치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합계 8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위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매매대금은 원고가 B의 [redacted]세무서 및 [redacted]공단에 대한 위 8천만 원의 체납금을 즉시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원고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처인 I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체납금을 변제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주식을 F, G, H, I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F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9,500주에 관하여 2006. 11. 23. J 명의로 개서하여 J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사실, G, H, I, J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4)에 '원고가 2005. 3. 8.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할 당시 G, H, I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6. 11. 23.에는 J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러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어 [redacted]세무서장은 2011. 12. 21. 당시 이 사건 주식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1

명의자이던 G, H, I, J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 이후 원고가 2011. 12. 31. G, H, I, J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개서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1. 12. 31.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B의 주주명부에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의하여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반면(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276 판결 참조),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이므로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법률관계를 달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은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일 뿐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아니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회복한 것을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1. 12. 31. B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11

결한다.

재판장 판사 사공영진

판사 장 래 아

판사 정 한 근